

증서번호 :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조사 위임 계약서
Collection & Credit Investigation Agency Agreement

채 권 자 (의뢰인)	
채 무 자 (조사대상자)	
수임담당	박건상 (010-2543-1519)

계약시 유의사항

1. 본계약 체결시 계약내용(특히 중요사항 설명 여부 확인)을 상세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본계약과 관련하여 채무관련 원인서류는 강제집행 등 원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계약 체결 후 반드시 좌측상단에 "고객용"이라고 명기된 계약서 원본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법적조치 비용 등을 변호사, 법무사 명의 계좌로 직접 지불하여야 하며 추심업무 종사자등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의뢰하신 채권에 대한 진행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credit.sci.co.kr>) "채권진행상황"의 "의뢰현황"에서 고객 인증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와의 채권추심·신용조사 위임계약과 관련 업무 진행 중에 불편·부당한 사항이나 인원발생 시 감사실로 연락 주시면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진행을 약속드립니다.(감사실 직통 : 02-3449-1575)

위임계약서

(위임인, 이하 "갑" 이라 한다)와(과) SCI평가정보 주식회사(수임인, 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추심 · 신용조사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임을 허용한 채권용 말한다.
2. "채무자"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보통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신용조사"란 "을"이 "갑"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변제금 수령 및 인도 등)

① "갑"과 "을"은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③ 전항의 수수료 외에 "갑"과 "을" 사이에 상호 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인도해야 할 변제금에서 상계한 후 해당 차액을 "갑"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등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제7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 위임계약서 또는 위임채권발치목록에 정한 바에 따라 약정한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전항과 관련하여 변제일 또는 제7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③ 전항과 별도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기타 수수료 또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 (지연손해금)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을"이 수임사실정보서를 발송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1.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를 수령한 경우
2.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채무인수, 담보취득, 경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3.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 처리한 경우
4. 채권 관련 변제금탁으로 "갑"이 공탁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경우 및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공탁되어 종료일 이후에 출금된 경우
5. "갑"이 "을"과 사전 협의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 경우
6. "을"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갑"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7. "갑"이 채무자를 상대로 취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에 "을"의 조력으로 "갑"이 변제를 받은 경우
8. 기타 채무자의 변제와 동일시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비용부담)

①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법조치 및 법비용 지급)

① 채무자에 대한 소송, 강제집행, 보존처분 등의 법적 조치는 "갑"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변호사, 법무사를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에 소요되는 일체의 법적 비용(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 "갑"이 부담하며, 직접 변호사, 법무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③ "갑"이 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 비용 등을 변호사, 법무사에게 직접 지불하지 아니하

고 "을"의 추심업무 증서자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갑"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법령 등의 제한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을"이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 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을"이 이미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을"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라 "갑"은 "을"에게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추심업무 수행이 있었고, 계약 기간이 종료 되지 않았음에도 "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심 성공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준하는 수수료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일정기간 추심활동 후 채무자가 '변제 능력 회복'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추심 활동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에게 통보 후 추심 보류 또는 계약 해지 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 (추가위임)

이 계약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 받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12조 (중복 추심위임 금지)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에 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갑"은 신용조사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수 없으며, "을"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 (손해배상책임)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を負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 수행 불능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6조 (합의결함)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또는 "을"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17조 (조사업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신용조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 포함)
2.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을"은 "갑"에게 조회대상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조회대상자에게 서면(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려야 함)

제18조 (조사수수료)

① "갑"은 계약체결 시 약정한 조사수수료를 "을"에게 선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신용조사에 착수한 이후 "갑"은 기 지급한 조사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조사업무 중지)

천재지변, 사변, 기타 미에 준하는 사태로 신용조사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용조사 목적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때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통지하고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면책)

"을"이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는 "갑"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법률상·사실상의 한계로 인한 조사 결과 및 신용조사 보고서용 토대로 행한 "갑"의 어떠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21조 (특약사항)

* 중요사항 설명 여부 확인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_____ (인)

* 채권자(위임자)가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 들었음"이라고 직접 기재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가)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임계약서

(위임인, 이하 '갑' 이라 한다)와(과) SCI평가정보 주식회사(수임인, 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추심·신용조사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2. "채무자"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한 소채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신용조사"란 "을"이 "갑"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③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변제금 수령 및 인도 등)

- ① "갑"과 "을"은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이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전항의 수수료 외에 "갑"과 "을" 사이에 상호 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인도해야 할 변제금에서 상계한 후 해당 차액을 "갑"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등의 지급)

- ① "갑"은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제7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 위임계약서 또는 위임채권별지목록에 정한 바에 따라 약정한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전항과 관련하여 변제일 또는 제7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전항과 별도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기타 수수료 또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 (지연손해금)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일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을"이 수임사실등보서를 발송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1.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를 수령한 경우
2.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채무인수, 담보취득, 정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3.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 처리한 경우
4. 채권 관련 변제공탁으로 "갑"이 공탁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경우 및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공탁되어 종료일 이후에 출금된 경우
5. "갑"이 "을"과 사전 협의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 경우
6. "을"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갑"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7. "갑"이 채무자를 상대로 취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에 "을"의 조력으로 "갑"이 변제를 받은 경우
8. 기타 채무자의 변제와 동일시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비용부담)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범죄 및 벌비용 지급)

- ① 채무자에 대한 소송, 강제집행, 보존처분 등의 법적 조치는 "갑"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변호사, 법무사를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에 소요되는 일체의 법적 비용(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직접 변호사, 법무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 ③ "갑"이 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 비용 등을 변호사, 법무사에게 직접 지불하지 아니하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가)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고 "을"의 추심업무 종사자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갑"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법령 등의 제한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을"이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③ 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을"이 이미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을"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라 "갑"은 "을"에게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을"의 추심업무 수행이 있었고, 계약 기간이 종료 되지 않았음에도 "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심 성공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준하는 수수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일일정기금 추심활동 후 채무자가 '변제 능력 회복'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추심 진행이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에게 통보 후 추심 보류 또는 계약 해지 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 (추가위임)

이 계약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 받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12조 (준북 추심위임 금지)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유지)

- ①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에 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없는 자의 무단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신용조사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수 없으며, "을"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 (손해배상책임)

-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 수행 불능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6조 (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또는 "을"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17조 (조사업무의 범위)

1.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신용조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 포함)
 2.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을"은 "갑"에게 조회대상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조회대상자에게 서면(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려야 함)

제18조 (조사수수료)

- ① "갑"은 계약체결 시 약정한 조사수수료를 "을"에게 선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신용조사에 착수한 이후 "갑"은 기 지급한 조사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조사업무 중지)

천재지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신용조사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용조사 목적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때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통지하고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면책)

"을"이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는 "갑"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법률상·사실상의 한계로 인한 조사 결과 및 신용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행한 "갑"의 어떠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21조 (특약사항)

※ 중요사항 설명 여부 확인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_____ (인)

※ 채권자(위임자)가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 들었음"이라고 직접 기재

'갑' [채권자 및 위임인]

'을' [수임인]

SCI 평가정보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4(건암사빌딩) / 대표번호 1577-1000

대표이사 임동



증서번호 :

신청서

계약현황	위임구분	<input type="checkbox"/> 채권추심 <input type="checkbox"/> 신용조사 <input type="checkbox"/> 재산조사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	계약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지점명	지점	영업담당자	

채권자 (의뢰인)	상호(성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개인채권자만 기재	
	주소					
	연락처	사무실 / 개인차 포함 포함		E-mail	신청서+채권서	
담당자	성명	사무실		팩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채무자 (조사대상자)	상호(성명)	외건 (세부 내용은 별지 목록에 의함)				대표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출생지	

연대보증인 (추가조사대상자)	상호(성명)	외명 (세부 내용은 별지 목록에 의함)				대표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출생지	

채권내역	채권구분	<input type="checkbox"/> 상사 <input type="checkbox"/> 민사 <input type="checkbox"/> 금융	채권종류	<input type="checkbox"/> 물품대금 <input type="checkbox"/> 공사대금 <input type="checkbox"/> 용역대금 <input type="checkbox"/> 대여금 <input type="checkbox"/> 카드대금 <input type="checkbox"/> 구상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인서류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거래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장부 <input type="checkbox"/> 지불각서 <input type="checkbox"/> 부도어음수표 <input type="checkbox"/>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집행권원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판결문 <input type="checkbox"/> 지급명령 <input type="checkbox"/> 공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채권발생(연체)일	년	월	일	시효완성일	년	월	일
	채권금액	원	원	금	원	이자	원	

참고사항	
------	--

수수료	신용조사비(추심)	원 (VAT 별도)	추심수수료	회수금액의 % (VAT 별도)
	영업수수료	원 (VAT 별도)	신용(채권)조사수수료	건당 원 (VAT 별도)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년 월 일

채권자(의뢰인)

SCI 평가정보주식회사

귀중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4(상수동, 건양사빌딩) 대표번호 1577-1006

대표이사 임 등 훈

(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서비스안내 등)

SCI 평가정보주식회사 귀중

귀사가 상품서비스 안내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2 조 3 항, 제 26 조 제 3 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0 조,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 법률」 제 34 조 등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의 목적

• 상품·서비스 홍보 및 판매권유, 사은·판촉행사 등 고객 편의 제공,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수집·이용 항목 :

•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선택적 정보: 팩스번호,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 **SCI** 평가정보주식회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 및 계약체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종개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

•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mail 등 수신 동의

• 귀사의 상품 소개 등을 위한 e-mail, 모사전송, sms 등의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당사 (신)상품 안내 및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려 하시는 경우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1577-1006),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 철회 및 마케팅활동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 . . .

수집·이용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임채권 별지목록

위임인(채권자) :

위임일자 : 20 년 월 일

No. _____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채무자 <input type="checkbox"/>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상호(성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연락처	
	주 소											출생지	
채 권 원 금	원	이 자	원	연체발생일	년		월	일					
수 수 료 (VAT별도)	신용조사비 (추 심)	원	추 심 수수료	총 %	(회수수료)	%	확 인			(인)			
	영업수수료	원			(영업수수료)	%							

No. _____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채무자 <input type="checkbox"/>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상호(성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연락처	
	주 소											출생지	
채 권 원 금	원	이 자	원	연체발생일	년		월	일					
수 수 료 (VAT별도)	신용조사비 (추 심)	원	추 심 수수료	총 %	(회수수료)	%	확 인			(인)			
	영업수수료	원			(영업수수료)	%							

No. _____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채무자 <input type="checkbox"/>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상호(성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연락처	
	주 소											출생지	
채 권 원 금	원	이 자	원	연체발생일	년		월	일					
수 수 료 (VAT별도)	신용조사비 (추 심)	원	추 심 수수료	총 %	(회수수료)	%	확 인			(인)			
	영업수수료	원			(영업수수료)	%							

No. _____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채무자 <input type="checkbox"/> 보증인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상호(성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연락처	
	주 소											출생지	
채 권 원 금	원	이 자	원	연체발생일	년		월	일					
수 수 료 (VAT별도)	신용조사비 (추 심)	원	추 심 수수료	총 %	(회수수료)	%	확 인			(인)			
	영업수수료	원			(영업수수료)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신청한 채권은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에 등록됩니다. (채권원금 → 「등록금액」, 연체발생일로부터 90일이 되는날 → 「등록사유발생일」)

SCI 평가정보주식회사 귀중



채 권 추 심 위 임 장

수 임 인

SCI 평가정보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4(상수동,건양사빌딩)/대표번호1577-1006

대 표 이 사 임 등 훈

채무자의 표시

상호(성명)		대 표 자		외 권 <small>(세부내용은 별지 목록에 의함)</small>
사업자번호 <small>(생년월일)</small>		전화번호 <small>(핸드폰)</small>		
주 소				

위임채권의 표시(채권내역)

20 년 월 일 현재

채권구분	□상사 □민사 □금융	채권종류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대여금		
				□카드대금 □구상금 □기타()	
원인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집행권원	□無 □판결문 □지급명령	
	□지불각서 □부도어음수표 □확인서			□공증 □기타()	
채권금액	원	원	금	원	이 자

위임인은 위임계약서(증서번호: _____)에 의거하여 채권의 회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사항

- 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 나.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 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 라.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단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는 제외.

■ 별첨: 위임채권 별지목록 _____ 부. 끝.

위임일자 : 20 년 월 일

위 위임인 상 호(성 명) (인)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주 소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14-81-47958

법인명(단체명) :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대표자 : 임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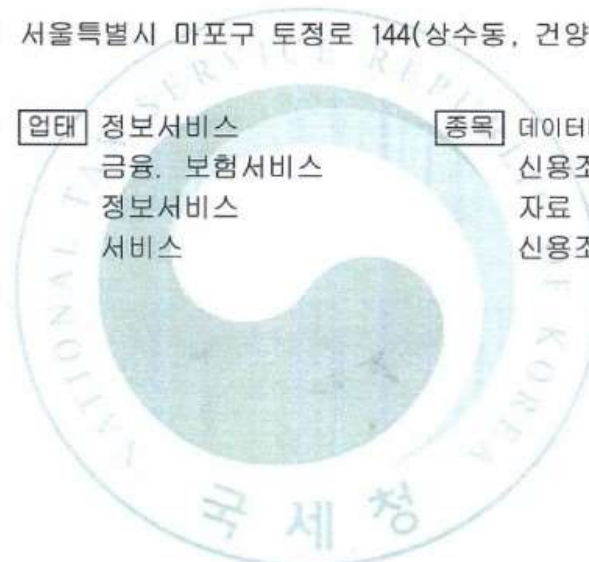
개업연월일 : 1992년 07월 27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0853419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4(상수동, 건양사빌딩)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4(상수동, 건양사빌딩)

사업의 종류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태	정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종목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금융, 보험서비스		신용조회업
		정보서비스		자료 처리업
		서비스		신용조사, 채권추심업

발급사유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sci0001@hometax.go.kr

2021년 08월 26일

마포세무서장

